

“문신 위화감, 출입 금지”...“하나의 문화, 역차별 안돼”

늘어나는 ‘노 타투 존’...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층 중심 문신 늘어 목욕탕·헬스장·수영장 등 출입 놓고 ‘논란’ “거부감 줄고 병역 수행 지장 없어” VS “거부감 여전...타인 배려 필요”

광주에 ‘노 타투 존’(No Tattoo Zone)이 생겨나면서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문신이 대중적인 문화로 확산되면서 거부감이 줄었지만, 일부 헬스장, 목욕탕, 수영장 등에 생긴 노 타투존에서 문신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SNS에 ‘#광주타투’라고 검색한 결과 23만여개의 게시물이 확인됐다. 포털 지도 검색에서 광주 지역을 확인하면 상화에 ‘타투’나 ‘문신’을 포함한 업체만 40곳이 넘게 검색된다.

낮 기온이 올라 벌써 낮에는 반소매 옷을 입는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일부 젊은이는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문신을 고민하고 있다.

과거 문신은 혐오감과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서 거부감이 많이 들었지만, 최근 젊은층에서는 보편화 됐기 때문이다. 각종 매체에 나오는 연예인들도 문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문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전신 문신에 있어서

도 혐역복무를 하도록 기준이 바뀔 정도다. 하지만 최근 문신을 한 사람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타투존이 생겨 논란이 되고 있다.

운동 관련 한 인터넷 카페에는 “광주시 상무지구 한 헬스장에 ‘이레즈미’(いれずみ·일본 야쿠자들이 하는 전신 문신) 문신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회원권 끊기 꺼려지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헬스장 업주는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다른 커뮤니티에는 ‘문신한 사람이 헬스장을 다니다 다른 손님들의 지속적인 신고로 헬스장 이용이 금지되고 환불 처리 됐다’는 글도 올라왔다.

과한 문신은 여전히 ‘조폭문화’로 여겨져 타인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이날 찾은 광주시 서구 지평동의 한 헬스장에는 ‘위화감 조성은 금지이며 적발 시 경고 없이 퇴실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헬스장 점장은 “문신을 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드러내는 손님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긴 옷을 입어달라



요청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본선동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는 한 사장도 “문신한 사람들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손님들이 종종 있어 곤란하다”고 말했다.

수영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정영훈(42)씨는 “최근 ‘MZ조폭’이 문신을 보여주며 사람들을 위협한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니 ‘문신한 사람은 곧 위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 같다”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단순히 문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막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힘든 일을 겪고 나서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양 팔에 ‘이레즈미’ 문신을 새겼다는 김모씨(32)는 “개인적인 의미를 담아 문신을 했을 뿐 조폭도 아니고 위협을 줄 의도가 아니다”며 “문신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 주의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성규(25)씨도 “요즘엔 문신으로 반려견이나 가족을 새기는 등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 됐기 때문에 ‘노 타투 존’까지 설정해 출입을 금지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성의 표현이라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한번 시술한 문신을 제거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시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신 제거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최지철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사는 “문신을 한 청소년들이 문신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취업준비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면서 “문신을 지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지울 때 2년 이상 고통...청소년 무분별한 문신 막는다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발의 도교육청 예방교육 조례안 통과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박문옥(민주·목포 3)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전남도교육청 문신 예방 교육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또 문신 관련 교육이 현실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문신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조례안 통과로 학교나 문신 예방 교육 위탁기

관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교육과정에 문신 예방 교육을 편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문신을 새기는 건 몇 시간이면 끝나지만 지을 때는 2년 이상 고통의 과정을 거친다”면서 “외국에서는 부모 동의 없이 한 문신의 경우 불법으로 문신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안식일 면접 거부 로스쿨수험생 불합격 취소해야”

법원 “면접 시간 바뀌도 제3자 불이익 적어”...전남대 수험생 승소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종교적 이유를 들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대법관 김선수)는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 일부를 4일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 입학 시험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지만 면접 일정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대학에 면접일정 변경을 요청했다.

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이기 때문에 면접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 A씨의 변경 요청 사유였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해 시험 응시를 비롯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남대는 A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합격 처리했다. 이에 A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면접)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패소했지만 2심은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 전남대가 불복하자 대법원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게 맞다고 2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이자 기본권 수범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차별 처우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며 “재림교 신자들의 신칭에 따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면접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도 마찬가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유치원 공립전환 비위’ 연루 유치원장·공무원 등 5명 징역형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매입형 유치원)해 주겠다고 금품을 받고, 광주시의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유치원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4일 뇌물교부·공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 중 브로커 역할을 한 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 6800여만원도 부과했다. 매입형 유치원은 사립 유치원을 교육청이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전임 교육감 시절 추진됐다.

이 사업 기밀을 빼내고 청탁 경비 등을 요구한 전 언론인 B씨도 징역 6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 기밀을 유출한 시 교육청 공무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도록 청탁한 유치원 원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다른 유치원 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2021년 유치원 원장 등으로부터 매입 유치원 선정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받아 최영환 당시 광주시의원에게 ‘선정에 힘을 써달라’며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비공개 문건을 B씨로부터 넘겨받고 200만원을 사래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길 원하는 유치원장들에게 접근해 청탁비나 수고비를 요구하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고 공무원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B씨도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필요한 경비 등을 노골적으로 요구해 수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아파트 공사장 70대 근로자 추락사

여수의 한 신축아파트 옥상에서 작업중이던 7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4일 여성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여수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노동자 A(71)씨가 4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지붕 방수 작업을 하던 A씨는 경사로로 이동하다 20여m 높이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작업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현장에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는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 인지 조사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